

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375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2. .

제 출 자 : 박수호 의원 외

☐ 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정하였으나, 타 시군과의 임야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중 경사도가 너무 낮아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가. 타 시군과의 임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중 경사도 20%미만을 20° (36%)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.(안 제17조제1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제2호중 “20퍼센트”를 “20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) ①(생략) 1. (생략) 2.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3. (생략)	제17조(일반변경 개발행위허가 기준) ①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20도----- 3. (현행과 같음)